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0.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구미시 조례 제1455호(2020.5.13. 공포)부칙 제1조에 따라 2021. 1. 1. 부터 생활쓰레기 처리 수수료 가격을 인상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감안하여 가격 인상 시기를 유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시행일 변경(안 별표5, 부칙 제1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조례 제1455호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종량제봉투 가격표(제10조제2항 관련)

종류	2021. 6. 30.까지		2021. 7. 1.부터	
	판매이윤	판매가격	판매이윤	판매가격
봉투 5ℓ	7	120	15	150
봉투 10ℓ	14	200	30	300
봉투 20ℓ	28	410	55	600
봉투 50ℓ	72	900	135	1,500
봉투 100ℓ	145	1,800	270	3,000
마대 10ℓ	100	1,0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구미시 조례 제1455호 구미시 폐 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u><단서 신설></u>	구미시 조례 제1455호 구미시 폐 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 ----- . <u>다만,</u> <u>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5의 개정</u> <u>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u> <u>한다.</u>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④ 생략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⑥ ~ ⑨ 생략

소 관 부 서		자원순환과
입 안 자	과 장	김 덕 종
	담 당	이 윤 균
	담 당 자	김 선 민 (480-5205)